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이유

[시행 2013.11.2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호, 2013.11.2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동물진료 법인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부대사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거나 해당 법인의 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을 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 및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동물진료법인 임원 선임 및 재산 취득의 보고, 자료의 제출, 사무 검사 등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1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동물등록번호(「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만 해당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제22조의14 및 제22조의15로 하고,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소재지·정관 및 최근 사업활동 내용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2. 설립 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 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되, 제2항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5.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사업 시작 연도 분(分)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6.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첨부한다),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7. 설립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나머지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②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3(임원 선임의 보고) 동물진료법인은 임원을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회의 회의록
2.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임원이 연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취임승낙서

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① 영 제13조의3에 따라 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 처분 사유서
 2. 처분하려는 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인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재산 처분에 관한 이사회회의 회의록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5. 처분하려는 재산과 전체 재산의 대비표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 담보 제공 등을 말한다)하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산처분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5(재산의 증가 보고) ① 동물진료법인은 매수(買受)·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 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적은 서류

3. 재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항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 ② 재산증가 보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증가된 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의6(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영 제13조의3에 따라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2. 정관 개정안(신·구 정관의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 회의록
4. 정관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신·구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7(부대사업의 신고 등) ①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 사본
 2.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② 시·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대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부대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④ 시·도지사는 부대사업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원본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돌려주어야 한다.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동물진료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최근 5년까지의 것을 대상으로,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최근 3년까지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정관
 2. 임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이사회 회의록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6.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및 관계 기관과 주고받은 서류
- ② 시·도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진료법인을 방문하여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2조의9(설립등기 등의 보고)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2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사무소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기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의10(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동물진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사유
2.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 방법 및 처분계획서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① 동물진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 연월일
2. 해산 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

②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 동물진료법인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4.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③ 동물진료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연월일, 해산의 원인과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 동물진료법인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신청 당시의 정관

제22조의12(청산 종결의 신고) 동물진료법인의 청산인은 그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의13(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2.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설립허가증
3. 제22조의3에 따른 임원선임 보고서
4.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처분허가신청서
5.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재산증가 보고서
6. 제22조의6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신청서
7. 제22조의10에 따른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8. 제22조의11제2항 전단에 따른 해산신고서
9. 제22조의11제3항에 따른 해산허가신청서
10. 제22조의12 전단에 따른 청산종결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